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기준) ①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과정별 학원 시설규모는 별표 1과 같다.

②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별표 2에 정하지 아니한 교습과정에 대하여는 교육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시설·설비 및 교구가 당해 교습과정 운영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별표 2의 기준으로 본다.

③영 제8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는 학원은 원칙상 이론강의가 실험·실습·실기 등에 비하여 적게 운영되는 학원을 말한다.

④지하실은 강의실·실습실·열람실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교습소는 영 제9조제1항제6호 내지 제7호의 기준에 적합하고 유사시 대피 가능한 외부 출구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⑤학원시설은 동일건물의 동일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일층에 시설이 곤란한 경우에는 생활지도 및 교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직상층 또는 직하층으로 이어진 2개층 이상에 시설할 수 있다.

제3조(정원) ①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교습과정별 반당 정원은 별표 2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에 따라 별표 3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반당 정원은 학원의 시설면적 증가에 따라 증원할 수 있다. 다만, 증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설비 및 교구를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제4조(학원의 교습시간 및 부제 교습횟수) ①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의 교습 시간은 05: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다만, 독서실은 24시간 이용에 제공할 수 있으나 24:00부터 04:00까지는 출입을 금한다.

②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부제 교습횟수는 반당 1일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1시간 이내 교습과정 : 12부제 이하(단, 자동차운전학원은 14부제 이하)
2. 2시간 이내 교습과정 : 6부제 이하
3. 3시간 이내 교습과정 : 4부제 이하
4. 4시간 이내 교습과정 : 3부제 이하
5. 4시간 초과 교습과정 : 2부제 이하
6. 종합반(입시 및 검정고시의 전 과목을 종합적으로 교습하는 과정) : 1부제
다만, 종합반 교습이 끝난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시간 범위내에서 위 각호의 부제를 따로 운영할 수 있다.

제5조(교습소 부제 교습횟수) 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의 부제 교습횟수는 1일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1시간 이내 교습 : 8부제 이하
2. 2시간 이내 교습 : 4부제 이하
3. 3시간 이내 교습 : 3부제 이하
4. 3시간 초과 교습 : 2부제 이하

제6조(교육환경정화 등) 영 제4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인접한 장소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원과 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영업소(이하 "유해업소" 라 한다)의 위치가 각각 지상 1층의 경우에는 수평거리가 20미터 이내인 장소
2. 학원과 유해업소의 위치가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학원과 유해업소간의 수평거리가 6미터 이내인 수평층과 직근상층 및 직근하층의 장소

제7조(강사 등의 채용 및 해임 보고) ①학원의설립·운영자는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사 및 생활지도사를 채용할 때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관할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 보고된 강사 및 생활지도사를 해임한 때에는 5일 이내에 관할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수강료등) ①학원의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료 등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시행일로부터 10일전에 관할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도 또한 같다.

②통보된 수강료 등은 교습과정 변경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1년 이내에는 변경할 수 없다.

제9조(행정처분)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행정처분의 대상, 기준,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1. 행정처분의 종류는 경고 및 시정 명령, 휴원, 폐원으로 하되 휴원 및 시정 명령의 경우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2. 행정처분은 위반사항의 경중, 위반정도 및 반복 위반 횟수등에 따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3.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학습자에게 끼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행정처분의 시기, 종류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1. 3. 25 조례 제188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1. 3. 26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충청북도시설강습소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인가, 등록 또는 신고된 학원 및 교습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인가, 등록 또는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③(폐지조례) 충청북도시설강습소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충청북도 조례 제1702 (1989. 4. 1)]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93. 5. 7. 조례 제20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등록 또는 신고된 학원 및 과외교습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인가, 등록 또는 신고된 학원 및 과외교습소로 보며, 이 조례 시행전에 접수된 설립 및 변경 신청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처리한다.

제3조(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등록된 학원은 이 조례에 의한 시설·설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조례 시행이후 위치변경 및 정원변경에 따른 원칙변경의 경우에는 이 조례에 정한 시설·설비 기준에 의한다.

부 칙 (1996. 2. 2. 조례 제2246호)

이 조례는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 .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등록된 학원 또는 신고된 교습소는 이 조례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전에 접수된 설립 및 변경신청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 표 1]

학 원 의 시 설 규 모

분 야	계 열	교습과정	시 설 규 모	비 고
문 리	보통교과	입시종합	시지역 210㎡이상, 기타지역 150㎡이상	강의실 기준
		입시단과	시지역 90㎡이상, 기타지역 60㎡이상	·
		검정고시	90㎡ 이상	·
	인문사회	어 학	90㎡ 이상	·
		성인고시	90㎡ 이상	·
		기 타	60㎡ 이상	·
기 술			[별표 2]의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기준	
경영실무	서 비 스 사 무		[별표 2]의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기준에 의 하되 [별표 2]에 없는 교습과정중 강 의실만 둘 수 있는 교습과정은 60㎡ 이상	
예 능			[별표 2]의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기준	
독 서 실			시지역 120㎡이상, 기타지역 60㎡이상	열람실 기준

[비 고]

1. 시지역중 읍·면지역은 기타지역에 포함한다.
2. 문리분야의 「어학」 교습과정은 영 제5조 제1항 [별표 1]의 어문교습과정중
회화를 주로 교습하는 교습과정을 말한다.

[별 표 2]

실험·실습·실기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분 야	계 열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비 고
가 술	1. 기 계	1. 자동차정비	<p>가. 시 설</p> <p>(1) 강의실 30㎡ 이상</p> <p>(2) 정비실습실 60㎡ 이상</p> <p>(3) 기재실 30㎡ 이상</p> <p>나. 설비 및 교구</p> <p>(1) 작업대 10대 이상</p> <p>(2) 디어젤기관 2대 이상</p> <p>(3) 가솔린기관 5대 이상</p> <p>(4) 시험기 및 측정기 5대 이상</p> <p>(5) 부대시설 기계 10종 이상</p> <p>(6) 일반공구 10세트 이상</p> <p>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2. 중기운전	<p>가. 시 설</p> <p>(1) 강의실 30㎡ 이상</p> <p>(2) 운전실습장 990㎡ 이상</p> <p>(3) 기재실 16.5㎡ 이상</p> <p>나. 설비 및 교구</p> <p>(1) 중기 가동완전품 4대 이상</p> <p>(2) 엔진체 1대 이상</p> <p>(3) 중장비 기술교육에 필요한 시험기 및 측정기 10대 이상</p> <p>(4) 배터리충전기, 전기배전판, 삼각대 구리스주유기 등 부대시설기계</p> <p>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분야	계열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비고
기술		3. 중기정비	<p>가. 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강의실 30㎡ 이상 (2) 정비실습실 60㎡ 이상 (3) 기재실 30㎡ 이상 <p>나. 설비 및 교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기(정비용, 불가동 분해조정용) 1대 이상 (2) 엔진체 2대 이상 (3) 각 장비별 부품 3조 이상 (4) 삼각대, 체인볼력, 전기용접기, 산소용접기, 야전용 유압프레스, 오일작기 각 1대 이상 (5) 중기정비 기술교육에 필요한 시험기 및 측정기 8종 이상 (6) 중기정비 기술교육에 필요한 일반공구 10세트 이상 (7) 작업대 8대 이상 <p>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4. 항공정비	<p>가. 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강의실 30㎡ 이상 (2) 정비실습실 60㎡ 이상 (3) 기재실 30㎡ 이상 <p>나. 설비 및 교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항공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고정익 1대 이상 (나) 회전익 1대 이상 	

분 야	계 열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비 고
기 술			(2) 엔 진 (가) 수평대향형 1대 이상 (나) 수직대향형 1대 이상 (다) 성형 1대 이상 (3) 제트엔진 (가) Turbo Jet 1대 이상 (나) Turbo Prop 1대 이상 (다) Turbo Shaft 1대 이상 (4) 시험기 및 측정기 5종 이상 (5) 일반공구 20점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5. 시계수리	가. 시 설 (1)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선반 1대 이상 (2) 전자기계조정기 6대 이상 (3) 뿔지 20개 이상 (4) 스탠드 20개 이상 (5) 자동분해소제기 1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6. 냉 동	가. 시 설 (1) 강의실 30㎡ 이상 (2) 실습실 60㎡ 이상 (3) 기재실 3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대기, 토양, 해양오염측정기 각 1대 이상	

분야	계열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비고
기술			(2) 소음진동측정기 2대 이상 (3) 수질검사 시험기 2대 이상 (4) 보일러 4종 이상(부속장치 포함) (5) 버너 4개 이상 (6) 개스분석기 1개 이상 (7) 소방 및 가스설비, 방호장치 및 보호구 안전기기 등 5종 이상 (8) 냉동 유니트 1종 이상 (9) 분해조립형, 개방형압축기 각 2대 이상 (10) 진공펌프, 회전식 압축기 각 1대 이상 (11) 밀폐형압축기 2대 이상 (12) 증발기, 응축기 2대 이상 (13) 기타 부속기기 10종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7. 기계	가. 시설 (1) 설계실 60㎡ 이상 (2) 실습공장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선반 2대 이상 (2) 모터 7마력 이상의 것 1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8. 자동차운전	가. 시설 (1) 강의실 66㎡ 이상 (2) 정비장 66㎡ 이상 (3) 주차시설 75㎡ 이상	

분야	계열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비고
기술			<p>(4) 기능교육장은 6,600㎡ 이상으로 하되, 제1종 대형면허반의 기능교습을 병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3,000㎡이상, 제2종 소형면허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의 기능교습을 병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1,000㎡ 이상의 부지를 추가 확보하여야 한다 (2층으로 기능교육장을 설치하는 때에는 상하연결 차도의 너비가 7m 이상이어야 함)</p> <p>나. 설비 및 교구</p> <p>(1)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9조(별표 15)에서 규정한 기능교습 코스 각 1조 이상</p> <p>(2) 기능교육장 일시 수용인원 1인에 1대 기준으로 기능교육장 면적 300㎡당 차량 1대 이내 (단, 차량은 생산공장에서 출고된 지 3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제작증 명서가 구비된 차량이어야 함)</p> <p>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9. 귀금속가공 · 보석감정	<p>가. 시설</p> <p>(1) 실습실 60㎡ 이상</p> <p>나. 설비 및 교구</p> <p>(1) 보석감정과정</p> <p>(가) 현미경 10~40배 1인당 1대</p> <p>(나) 굴절계 1인당 1대</p>	

분야	계업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비고
기술			<p>(다) 정밀저울 3인당 1대 (라) 전자저울 3인당 1대 (마) 분광기 2인당 1대 (바) 자외선기 2대 이상 (사) 이색경 2대 이상 (아) 각종 보석류 200종 이상과 다이아몬드 20개 이상</p> <p>(2) 귀금속세공과정 (가) 산소용접기 2대 이상 (나) 마모기 2대 이상 (다) 광택기 2대 이상 (라) 전기로 2대 이상 (마) 사출기 5대 이상 (바) 원심주조기 2대 이상 (사) 흡입주조기 2대 이상 (아) 고무모형 압착 2대</p> <p>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2. 전기	1. 전기	<p>가. 시설 (1) 실습실 60㎡ 이상 (2) 전기실 30㎡ 이상</p> <p>나. 설비 및 교구 (1) 모터 1마력 이상의 것 2대 이상 (2) 수전, 송전배전실 (3) 테스타 10대 이상 (4) 트랜스(변압기) 5대 이상 (5) 실험대 5대 이상</p> <p>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분 야	계 열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비 고
기술		2. 전 자	<p>가. 시 설</p> <p>(1) 실습실 60㎡ 이상</p> <p>(2) 기재실 15㎡ 이상</p> <p>나. 설비 및 교구</p> <p>(1) 공통기재</p> <p>(가) 회로시험기 2인당 1대 이상</p> <p>(나) 신호발전기 3대 이상</p> <p>(다) 트랜지스터체커 1대 이상</p> <p>(라) 저주파발전기 2대 이상</p> <p>(마) 트랜지스터 1대 이상</p> <p>(바) 시그올레트시 1대 이상</p> <p>(사) 정전용량계 1대 이상</p> <p>(아) 임피던스브릿쉬 1대 이상</p> <p>(자) 조립 및 수리실습에 필요한 공구 30조 이상</p> <p>(2) 텔레비전과정</p> <p>(가) "(1)"호의 공통기재</p> <p>(나) 텔레비전, 스위트발전기 1대 이상</p> <p>(다) 음주선, 오실로스코프 1대 이상</p> <p>(라) 고전압계 1대 이상</p> <p>(3) 컴퓨터기기과정</p> <p>(가) "(1)", "(2)"호의 설비 및 교구</p> <p>(나) 컴퓨터(전산기기) 5대 이상</p> <p>(다) 컴퓨터용 모니터 10대 이상</p>	

분 야	계 열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비 고
기 술			(라) 컴퓨터용 프린터 1대 이상 (마) 보조기억장치 2대 이상 (4) 비디오과정 (가) '(1)', '(2)'호의 설비 및 교구 (나) VTR 2대 이상 (다) 비디오카메라 2대 이상 (라) 모니터텔레비전 3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 통 신	가. 시 설 (1)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송수신기 각 1대 이상 (2) 컴퓨터 2대 이상 (3) 오실로스코프 1대 이상 (4) 표준발전기 1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 정 보	1. 컴 퓨 터	가. 시 설 (1)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32Bit 이상의 퍼스널컴퓨터 일시 수용인원 1인당 1대 (2) 프린터기 5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 정보처리	가. 시 설 (1) 강의실 30㎡ 이상 (2) 실습실 60㎡ 이상	

분 야	계 열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비 고
기술			나. 설비 및 교구 (1) CPU 586 156MHZ급 이상, M/M 16MB 이상, HDD 1.6GB 이상의 컴퓨터 1대 이상 (2) 위 "(1)호"와 근거리 통신망으로 연결된 퍼스널컴퓨터 20대 이상 (3) 하드디스크를 갖춘 32Bit 퍼스널 컴퓨터 20대 이상 (4) 교육용 프로그램 20개 이상 (5) 컴퓨터 회로기판 및 각종 IC류 10대 이상 (6) 입력작성을 위한 기기 1대 이상 (7) 출력을 위한 프린터 5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4. 화 공	1. 화 공	1. 화 공	가. 시 설 (1) 실습실 60㎡ 이상 (2) 기재실 15㎡ 이상 나.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 인 쇄	가. 시 설 (1)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인쇄기 2종 이상 (2) 활자, 활자판 및 기타 시설·설비 및 교구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분 야	계 열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비 고
기 술	5. 산업안전	1. 산업안전	가. 시 설 (1) 실습실 60㎡ 이상 나.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6. 건 설	1. 토목·건축	가. 시 설 (1) 설계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제도판 및 제도대 1인당 1조 (2) 측량기구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7. 농림수산	1. 동 물	가. 시 설 (1)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사육과정 (가) 사육장 300㎡ 이상 (나) 동물 5종 이상 (2) 박제과정 (가) 박제표본(어류, 조류, 갑각류) 5점 이상 (나) 박제 제작기구 1인당 1조이상 (3) 모피피혁과정 (가) 화공약품 처리장 15㎡ 이상 (나) 회전기, 약품침전 탱크전 1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분 야	계 열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비 고
기술	8. 식품	1. 조리	<p>가. 시설</p> <p>(1) 조리실 60㎡ 이상</p> <p>나. 설비 및 교구</p> <p>(1) 조리대 4인당 1대 이상</p> <p>(2) 냉장고(250ℓ 이상) 2대 이상</p> <p>(3) 환풍기 2대 이상</p> <p>(4) 각 요리별로 10인당 요리에 필요한 기구 1식 이상</p> <p>(5) 급수시설 : 요리대수에 상응한 수</p> <p>(6) 제독시설</p> <p>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2. 제과·제빵	<p>가. 시설</p> <p>(1) 실습실 60㎡ 이상</p> <p>나. 설비 및 교구</p> <p>(1) 시청각교구 세트(TV, VTR, 슬라이드)</p> <p>(2) 수직형믹스 중형 2대 이상</p> <p>(3) 오븐(LPG 또는 전기) 2장 용량 1대 이상</p> <p>(4) 수평반죽기 중형 2대 이상</p> <p>(5) 발효실(LPG 또는 전기) 40장 용량 1대 이상</p> <p>(6) 추저울(5kg) 6대 이상</p> <p>(7) 비중계, 당도계, PH미터계, 수분측정기 각 1대 이상</p> <p>(8) 습도계, 온도계 각 4대 이상</p>	

분 야	계 열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비 고
기 술			(9) 로라(Deught Sheeter) 1대 이상 (10) 냉장고(1000ℓ) 1대 이상 (11) 앙금믹서(중형) 1대 이상 (12) 썬크대 : 실습실별로 2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 조주 (칵테일)	가. 시 설 (1)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진열대 4대 이상 (2) 조주대 4대 이상 (3) 양주병(학과 식별용) 200종 이상 (4) 양주병(실습용) 진열대 1대당 30종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9. 의 복 1. 복 장 (양재·한복)	가. 시 설 (1)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디자인 실습대 2인당 1대 이상 (2) 재봉기 2인당 1대 이상 (3) 전기다리미 2인당 1대 이상 (4) 재단대 4인당 1대 이상 (5) 전신마네킹 5개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 수예·자수	가. 시 설 (1) 실습실 60㎡ 이상	

분 야	계 열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비 고
기 술			나. 설비 및 교구 (1) 재봉기 자수과정 (가) 자수재봉기 1인당 1대 이상 (2) 수예, 순자수, 인형, 조화과정 (가) 과정에 필요한 설비 및 교구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 편 물	가. 시 설 (1) 실습실 60㎡ 이상 나.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0. 방 송		1. 비디오촬영	가. 시 설 (1) 강의실 30㎡ 이상 (2) 실습실 60㎡ 이상 (3) 녹음실 및 기재실 2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베타믹스용 VTR 5대 이상 (2) VHS용 VTR 5대 이상 (3) U-메타 VTR 5대 이상 (4) VTR 카메라 10종 이상 (5) 8mm 릴데크등 5종 이상 (6) TV 수상기 10대 이상 (7) 조명기구 10종 이상 (8) 간이편집기 자막기 3종 이상 (9) 오디오, 더빙용오디오Set 5종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분 야	계 열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비 고
기 술	11. 산업응용	1. 패션디자인	가. 시 설 (1) 강의실 30㎡ 이상 (2)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디자인 제도대 2인당 1대 (2) 축소·확대복사기 1대 이상 (3) VTR 1대 이상 (4) 에어브로쉬 1Set 이상 (5) 모타 미싱 10대 이상 (6) 패턴실습대 4인당 1대 이상 (7) 스팀아이롱 5대 이상 (8) 인대 5대 이상 (9) 컴퓨터 2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 산업디자인	가. 시 설 (1)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인테리어디자인과정 (가) 제도판 1인당 1대 이상 (나) 실습대(1인용) 2인당 1대 이상 (다) 실습용컴퓨터 3대 이상 (2) 그래픽디자인과정 (가) 실습대(1인용) 2인당 1대 이상 (나) 컴퓨터샤 1대 이상 (다) 실습용컴퓨터 2인당 1대 이상	

분 야	계 열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비 고
기 술			(3) 컴퓨터디자인과정 (가) 컴퓨터 일시 수용인원 1인당 1대 이상 (나) 스캐너 1대 이상 (다) 칼라프린터 1대 이상 (라) 플로터 1대 이상 (마) VTR 1대 이상 (바) TV 1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 피아노조율	가. 시 설 (1)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정음작업대 4대 이상 (2) 조율튜우너, 튜링햄머 각 4대 이상 (3) 스테이샤, 스프운밴다, 건반고르기 자, 다이얼게이지 각 2대 이상 (4) 피아노 4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2. 간 호		1. 간호조무사	가. 시 설 (1) 강의실 30㎡ 이상 (2)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침대 대인용 2개 이상 소인용 1개 이상 (2) 인체모형 1개 이상 (3) 인체해부 및 생리궤도 각 1부 이상	

분야	계열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비고
기술			(4) 시력 및 색명표 각 1부 이상 (5) 신장 및 체중계 각 1개 이상 (6) 주사기 10종 40개 이상 (7) 소독기 중형 1개 이상 (8) 혈압계, 청진기 각 20개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3. 이·미용	1. 미용	가. 시설 (1)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실습대(4인용 이상) 5대 이상 (2) 건발기, 파마기, 마네킹(고정대 포함), 미용의자, 화장대 각 10조 이상 (3) 안면기(스팀, 적외선, 자외선) 각 1종 이상 (4) 대형거울 2개 이상 (5) 세면장 및 급수시설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 이용	가. 시설 (1)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이발의자 10개 이상 (2) 중기소독기 2조 이상 (3) 건발기 2대 이상 (4) 바리칸, 면도, 가위 각 10대 이상 (5) 대형거울 : 이발의자수와 상응하는 개수	

분야	계열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비고
기술			(6) 세면장 및 급수시설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경영실무	1. 서비스	1. 관광	가. 시설 (1)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관광도서 30종 이상 (2) 한국지도(50만분의 1), 세계지도 (3) 고적, 명승지, 안내도 반별 각 1매 (4) 녹음기, 환등기, 카메라 반당 각 1대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 사무	1. 주산	가. 시설 (1)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대형주판 2개 이상 (2) 속도측정시계 2개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 타자	가. 시설 (1) 실습실 60㎡ 이상 나. 일시 수용인원 1인당 타자기 1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 워드프로세서	가. 시설 (1)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입력작성을 위한 기기 1인당 1대 (2) 출력을 위한 프린터기 5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분야	계영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비고
예능	1. 예능	1. 무용·전통 무용	가. 시설 (1) 실습실 60㎡ 이상 (2) 탈의실 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전축, 녹음기 각 1대 이상 (2) 대형거울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 미술	가. 시설 (1)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정물대 1개 이상 (2) 화판 및 이젤 일시 수용인원 1인당 1개 이상 (3) 서양화 과정에 있어서는 석고 및 석고대 10점 이상 (4) 동양화 과정에 있어서는 베틀, 모포 등 필요한 시설·설비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 서예	가. 시설 (1)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베틀 1인당 1대, 먹가는 도구 1인당 1대 이상 (2) 서법도서 10종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분 야	계 열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비 고
예 능		4. 모델·영화 ·연극	가. 시 설 (1) 실기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영화기술과정 (가) 현상실 10㎡ 이상 (나) 녹음실 15㎡ 이상 (다) 16미리 촬영기 및 영사기 각 1대 이상 (2) 모델, 무대예술, 배우과정 (가) 무대장치, 조명장치, 녹음장치, 확장장치 1조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5. 음 악	가. 시 설 (1) 음악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공통기준 (가) 감상용전축(채널당 출력 20W 이상) 1대 이상 (2) 악기과정 (가) 필요한 악기 5대 이상 (3) 성악과정 (가) 현대성악 : 피아노 1대 이상 (나) 고대성악 : 장고, 가야금, 피리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분야	계열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비고
예능		6. 바둑	가. 시설 (1)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바둑판 10조 이상 (2) 바둑해설판 1조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7. 공예·도예	가. 시설 (1)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공작대 4인당 1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8. 사진	가. 시설 (1) 실습실 60㎡ 이상 (2) 암실 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사진기 3종 이상 (2) 확대기 2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9. 꽃기예·꽃꽂이	가. 시설 (1)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궤도 5종 이상 (2) 실습공구 20조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분 야	계 열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비 고
독서실	독서실	독서실	<p>가. 시설</p> <p>(1) 열람실 { 시 지역 120㎡이상 기타지역 60㎡이상</p> <p>나. 설비 및 교구</p> <p>(1) 열람대 1인당 1대 (열람대 넓이는 가로 78cm, 세로 58cm 이상)</p> <p>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별 표 3]

실험·실습 또는 실기를 필요로 하는 학원의 교습과정별 반당정원

분 야	계 열	교습과정	반당정원	비 고
기 술	1. 기 계	1. 자동차정비	40	실습실 60㎡ 기준
		2. 중기운전	30	실습장 990㎡ 기준
		3. 중기정비	30	실습실 45㎡ 기준
		4. 항공정비	30	실습실 60㎡ 기준
		5. 시계수리	30	실습실 45㎡ 기준
		6. 냉 동	40	실습실 45㎡ 기준
		7. 기 계	40	실습실 60㎡ 기준
		8. 자동차운전	기능교습 장면적 및기능 코스규 모에따 라산정	가.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반 : 당해 기능교육장 부지면적 300㎡ 당 1인 이내
		나. 대형 및 특수반 : 당해 기능코스 1조당 2인 이내		
			다. 제2종 소형 및 원동기장치 자전 거반 : 당해 기능교육장 부지 면적 50㎡당 1인	
	9. 귀금속가공 보석감정	30	실습실 45㎡ 기준	
2. 전 기	1. 전 기	40	실습실 45㎡ 기준	
	2. 전 자	40	실습실 45㎡ 기준	
	3. 통 신	40	실습실 45㎡ 기준	
3. 정 보	1. 컴 퓨 터	30	실습실 45㎡ 기준	
	2. 정보처리	30	실습실 45㎡ 기준	

분 야	계 열	교습과정	반당정원	비 고
기 술	4. 화 공	1. 화 공	40	실습실 45m ² 기준
		2. 인 쇄	40	실습실 45m ² 기준
	5. 산업안전	1. 산업안전	40	실습실 45m ² 기준
	6. 건 설	1. 토목·건축	20	실습실 45m ² 기준
	7. 농림수산	1. 동 물	20	실습실 45m ² 기준
	8. 식 품	1. 조 리	40	실습실 45m ² 기준
		2. 제과·제빵	40	실습실 45m ² 기준
		3. 조 주	40	실습실 45m ² 기준
	9. 의 류	1. 복 장	30	실습실 45m ² 기준
		2. 수예·자수	30	실습실 45m ² 기준
		3. 편 물	20	실습실 45m ² 기준
	10. 방 송	1. 비디오촬영	30	실습실 45m ² 기준
	11. 산업응용	1. 패션디자인	40	실습실 45m ² 기준
2. 산업디자인		30	실습실 45m ² 기준	
3. 피아노조율		30	실습실 45m ² 기준	
12. 간 호	1. 간호조무사	40	실습실 60m ² 기준	
13. 이·미용	1. 미 용	20	실습실 45m ² 기준	
	2. 이 용	30	실습실 45m ² 기준	
경영실무	1. 서 비 스	1. 관 광	40	실습실 45m ² 기준
	2. 사 무	1. 주 산	40	실습실 45m ² 기준
		2. 타 자	40	실습실 45m ² 기준
3. 워드프로세서		30	실습실 45m ² 기준	
예 능	예 능	1. 무용·전통 무용	20	실습실 45m ² 기준
		2. 미 술	30	실습실 45m ² 기준

분 야	계 열	교습과정	반당정원	비 고
예 능		3. 서 예	30	실습실 45㎡ 기준
		4. 모델·영화·연극	30	실습실 45㎡ 기준
		5. 음악(피아노)	20(12)	실습실 45㎡ 기준
		6. 바 독	30	실습실 45㎡ 기준
		7. 공예·도예	30	실습실 45㎡ 기준
		8. 사 진	30	실습실 45㎡ 기준
		9. 꽃기에·꽃꽂이	30	실습실 45㎡ 기준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것은 유사한 교습과정을 적용한다.